

## 보험업법 시행령

<목 차>

### 1.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현지은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최훈		연락처	02-2100-2964
	과장	손주형		이메일	jieun88@korea.kr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			
	2.규제조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95조의5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 불가</p> <p>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모집시 실손형 보험상품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안내토록 할 필요</p>			
	8.규제내용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기존 실손의료보험 외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타 실손보험도 포함하도록 확대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10.규제목표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31.72	0	131.72
	피규제자 이외	0	38,151.25	-38,151.25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4.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131.72	0	-5,043.96
--	----------	--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p>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 상품계약(이하 “<u>실손의료보험계약</u>”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p> <p>1. 삭제</p> <p>2. 3. (생략)</p> <p>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u>실손의료보험계약을</u>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u>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u>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u>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u>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① ----- ----- ----- ----- -- <u>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상품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보험계약(이하 <u>기타손해보험계약</u>”이라 한다)</u> --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 ----- <u>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u> ----- ----- ----- <u>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u>-----.</p> <p>③ ----- ----- <u>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u> ----- ----- -----.</p> <p>④ (현행과 같음)</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은 보장내용이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불가(보장한도는 확대)

\* 상법 §672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름

○ 그러나, 소비자 착오 또는 모집인의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복가입과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 현행 보험업법령은 '실손의료보험계약'에 한하여 모집시 중복계약 조회 의무를 부과

○ 시스템을 통한 일괄적 중복확인 가능한 유형의 보험계약은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조회토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실손의료보험계약'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조회토록 의무화
규제대안1	대안명	일부 손해보험 계약으로 확대
	내용	금감원장이 정하는 일부 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조회토록 의무화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손해보험 계약으로 확대
	내용	모든 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조회토록 의무화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 비용 미발생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할 우려
규제대안1	중복계약 체결여부 확인이 용이한 유형의 보험계약은 이를 확인토록 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가능	현행유지안 대비 보험회사의 규제 이행을 위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모든 손해보험은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보험계약 이중가입 가능성을 차단	시스템을 통하여 중복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되므로 보험회사의 규제 이행이 곤란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모든 손해보험 계약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 이행이 불가능\*

\* (예) 보험목적물이 물건(예: 기계, 재고자산)인 손해보험계약 : 보험목적물에 대한 고유식별방법이 없어 시스템을 통한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 불가능  
기타 벌금담보 :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이 차별화되어,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약관을 모두 확인할 필요

○ 보험상품의 표준화 수준, 시스템을 통한 일괄적 중복계약 체결 여부 조회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중복계약 체결여부 확인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대안1이 비용 효과적

### 3. 규제목표

이중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장이 동일한 손해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시스템을 통한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및 보험가입건수 등을 감안한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복계약 체결여부 의무조회 대상 상품을 정할 예정이므로 비례적 타당성 확보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고려사항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 일몰설정 여부

□ 중복가입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몰 설정 곤란

####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일부 손해보험 계약으로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31.72백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일부 손해보험 계약으로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1.72		131.7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38,151.25	-38,151.25
정부				
총 합계		131.72	38,151.25	-38,019.53
기업순비용		131.72	연간균등순비용	-5,043.96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중복조회 시스템에 보험상품을 추가하면 되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행정인력 소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6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 사항
- 보험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중복확인 의무화를 추진할 기타 실손 담보를 검토 중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은 보장내용이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불가(보장한도는 확대)

\* 상법 §672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름

- 시스템을 통한 일괄적 중복확인 가능한 유형의 보험계약은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조희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1.72		131.7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38,151.25	-38,151.25
정부				
총 합계		131.72	38,151.25	-38,019.53
기업순비용		131.72	연간균등순비용	-5,043.96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 1 : 일부 손해보험 계약으로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중복조회 시스템 개편
설명	현재 손해보험회사는 모집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실손보험계약 유형을 동 시스템에 추가할 필요

세분류	손해보험회사																														
활동제목	중복조회 시스템 개편																														
비용항목	기타																														
비용	131,728,30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손해보험회사 수[25]*시스템 개발인력[1]*시스템 개발기간[22]*1인당 인건비[239,506]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평균임금 자료(통계청, 2017년 기준) 이용</p> <p>○ 보험업계 실무자 등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중급기술인력 1명이 투입되어 약 1개월 작업하면 시스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p> <p style="text-align: center;"><b>&lt;SW기술자 평균임금 &gt;</b></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 분</th> <th>조사인원(명)</th> <th>평균임금(원)</th> </tr> </thead> <tbody> <tr> <td>기술사</td> <td>384</td> <td>452,611</td> </tr> <tr> <td>특급기술자</td> <td>17,531</td> <td>391,068</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10,302</td> <td>305,353</td> </tr> <tr> <td><b>중급기술자</b></td> <td><b>10,533</b></td> <td><b>239,506</b></td> </tr> <tr> <td>초급기술자</td> <td>13,939</td> <td>191,320</td> </tr> <tr> <td>고급기능사</td> <td>90</td> <td>191,177</td> </tr> <tr> <td>중급기능사</td> <td>235</td> <td>158,490</td> </tr> <tr> <td>초급기능사</td> <td>211</td> <td>114,914</td> </tr> <tr> <td>자료입력원</td> <td>174</td> <td>113,959</td> </tr> </tbody> </table>	구 분	조사인원(명)	평균임금(원)	기술사	384	452,611	특급기술자	17,531	391,068	고급기술자	10,302	305,353	<b>중급기술자</b>	<b>10,533</b>	<b>239,506</b>	초급기술자	13,939	191,320	고급기능사	90	191,177	중급기능사	235	158,490	초급기능사	211	114,914	자료입력원	174	113,959
구 분	조사인원(명)	평균임금(원)																													
기술사	384	452,611																													
특급기술자	17,531	391,068																													
고급기술자	10,302	305,353																													
<b>중급기술자</b>	<b>10,533</b>	<b>239,506</b>																													
초급기술자	13,939	191,320																													
고급기능사	90	191,177																													
중급기능사	235	158,490																													
초급기능사	211	114,914																													
자료입력원	174	113,959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정량)제목	보험료 이중부담 절감
--------	-------------

금액	38,151,254,713
산식	연간 보험료 절감 895억원 X 0.0268 X 2 = 48억원
근거설명	<p>1) 보험업계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16년 상반기 기준, 시스템을 통해 중복계약 체결여부 조치가 가능한 손해보험상품의 원수 보험료는 약 895억원으로 추산</p> <p>2) 보험업계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16.8월말 기준, 해당 보험상품 중 중복가입건의 비율은 약 2.68%로 추산 (단, 보장범위의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도 포함)</p> <p>3) 따라서, 중복조치 의무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부담은 최대 연간 약 48억원으로 추산. 다만, 보장범위가 일부만 중복되어 보장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보장 한도를 늘리기 위한 경우 등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한 경우도 포함됨</p>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